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82
----------	------

발의연월일 : 2016. 11. 23.

발의자 : 김경수 · 강병원 · 강창일

김관영 · 김상희 · 김수민

김영춘 · 김정우 · 김종훈

김해영 · 남인순 · 박남춘

박주민 · 서형수 · 손금주

윤관석 · 전재수 · 황주홍

황희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자동소음측정망이 해당 지역의 소음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장소 변경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소음대
책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2항 신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
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생 략) <u><신 설></u>	제10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